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현행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」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, 민주시민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의 소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

-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,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되어 왔습니다.

- 이에, 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』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각 주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,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,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